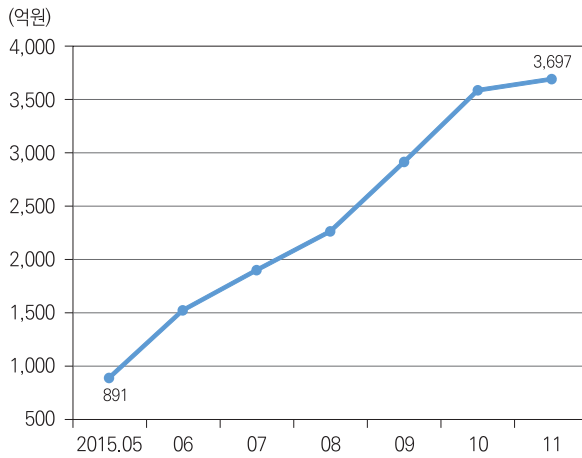


## 국내 P2P 대출 시장 현황

- 국내 P2P 대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, 최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정비 계획을 발표
  -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의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며,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와 P2P 플랫폼의 고객 투자금 관리 및 정보 공시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
  - 향후 P2P 대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의 조화를 위하여 이번 가이드라인 중 투자금액 한도와 선대출금지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업계와 금융당국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- 
- 국내 P2P 대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, 최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및 시장 정비 계획을 발표<sup>1)</sup>
    - P2P 대출시장(Peer to Peer Lending)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로,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하에 새로운 투자 방안으로 평가되어 최근 급속한 성장세
      - 평균 수익률은 업체와 대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~13%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, 투자기간은 6~36개월 사이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남
      -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로 인하여 P2P 대출 시장의 누적 투자액은 올해 5월 891억원에서 11월 3,697억원을 기록했으며, 투자자수 또한 9월말 기준 13.6만명으로 6월말의 3.7만명 대비 260% 이상 증가하는 모습(차입자 수 역시 급증하여 9월말 4,891명으로 6월 대비 약 50% 증가)
    - 부동산관련 대출 위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부동산 PF 투자가 대출 유형별 잔액의 47% 이상을 차지했으며 개인신용, 부동산담보대출, 소상공인 법인 대출이 각각 17%, 15%, 8%를 구성(2016년 11월말 기준)
      -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P2P 업체에서 부동산 담보가치와 사업수익성 등을 평가한 후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, 부동산 담보물로 인하여 개인신용과 같은 신용 P2P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하에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다는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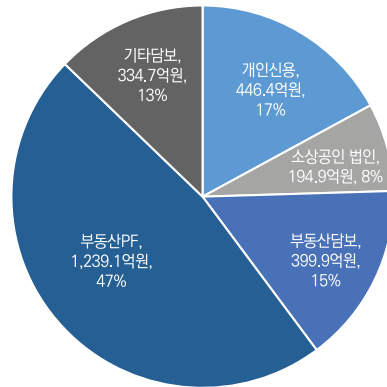
1) 금융위원회, 2016. 11. 2.

국내 P2P 대출 시장 누적 투자액



자료: 한국 P2P 금융협회

유형별 대출 잔액



주 : 2016년 11월 30일 기준

자료: 한국 P2P 금융협회

□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의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며,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 한도와 P2P 플랫폼(업체)의 고객 투자금 관리 및 정보 공시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

- 최근 P2P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투자한도 설정하고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금액에 차등을 둘 계획
  - 개인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동일 투자대상 500만원, 총 누적금액 1,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(연간 1개의 P2P 업체 기준)
  - 일정 소득요건<sup>2)</sup>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동일 투자대상 2,000만원, 총 누적금액 4,000만원까지 투자 가능
- 또한 P2P 업체의 자산과 고객의 예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고객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거나 업체가 파산할 경우를 방지하고, 투자자와 차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강화
  - 현재 다수의 P2P 업체가 고객의 투자금을 해당 업체의 명의로 거래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고객 투자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
  - 고객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투자위험, 수익률, 연체율 등의 정보를 비롯하여, 차입자에게도 대출 이후 상환방식, 연체이자, 추심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관련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방침
- P2P 업체를 비롯하여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, 업체는 대출의 중개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
  - 이는 P2P 업체가 차입자 심사 후 자사의 자금으로 선대출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관행을 금지하여, 대부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으로서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 형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

2)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·근로소득 1억원 초과 요건

- 향후 P2P 대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의 조화를 위하여 이번 가이드라인 중 투자금액 한도와 선대출금지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업계와 금융당국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  - 투자금액 제한의 경우 최근 P2P 시장의 성장세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념에서 볼 때 투자 상한선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, 선대출 후 고객 모집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과 투자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필요성을 주장
    - 반면 금융당국은 업체당 1,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함으로써,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여러 업체를 통하여 투자할 경우 분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
  - 해외의 경우 역시 P2P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대출사기, 중개업체의 도산,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법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
    - 다만 P2P 시장을 통하여 대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충될 뿐 아니라,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각종 제한 요건을 보완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연구원 표영선